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1일, 안태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
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9.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태준의원)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하여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중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략)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u>주민 전체가 합의한</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 ----- ----- -----주민의 <u>4분의 3 이상이 동의</u> -----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시행기간 및 <u>지원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u>지원방법과 제2항에 따른 주민의 범위 및 동의 절차</u> ----- ----- -----.

현행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¹⁾으로 구분됨.

그리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하되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일부를 부담²⁾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재원으로 부담한다. 다만, 송·변전설비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재원으로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자별 지원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범위에서 시행해야 하고, 사업 대상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이는 현금성 지원³⁾인 주민지원사업 외에 마을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임.

그런데, 주민들의 대부분이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단 1명의 주민이라도 반대하면 주민지원사업 확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전체 주민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수의 반대로 인해 다수 주민이 원하는 주민지원사업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례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을 전체 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동의 요건 충족이 보다 용이해져서 지원사업 추진도 상대적으로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

3) 주민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전기요금의 보조,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으로 개별 주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성격이 강함.

4) 일부 주민의 반대로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자료 1] 참조

다만, 현행법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목적⁵⁾은 ① 전력 공급의 안정 및 ② 국민경제·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이므로 주민에 대한 개별적 보상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용창고 태양광 설치 수익사업, 지역인재 장학기금 지원 등과 같은 공동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로 보임.

그런데 현행 법률에 따라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주민 지원사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전환하는 마을이 '24년 기준 전체 대상 마을의 31%에 달하고 있고, 전환 마을의 약 94%가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100%로 정한 것을 볼 때, 동의요건이 완화되면 상당수 마을에서 공동지원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⁶⁾이 있음.

참고로, 해당 법률의 주민지원사업은 개별지원이라는 점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기요금보조사업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유사한데 각각의 사업이 개별지원 비중의 상한을 규정⁷⁾하고 있음.

5) 제1조(목적)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추가로,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은 송·변전설비 종류 및 규정 거리에 따라 정해지는데 같은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더라도 일부 주민은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동지원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면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 비중 상한은 지원사업비의 40%이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사업 비중 상한은 20%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나 개정안에 따라 공동지원사업의 축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에 공동 지원사업비 지급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